

2020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안 동 시 장

2020회계연도 안동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1년 4월 5일 ~ 4월 24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이 경 란 (안동시의회 시의원)
 - 위 원 : 변 창 호 (세무사)
 - 위 원 : 김 선 웅 (세무사)
 - 위 원 : 이 윤 수 (공인회계사)

2020회계연도 안동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의견서

안동시장 귀하

2021년 5월 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안동시 의회로부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24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안동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안동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회계검사를 포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 금고의 출납이 모두 정확한지를 확인하였고, 세부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지출서류 재확인 및 현장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안동시의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선 및 권고할 부분은 첨부와 같이 의견(대안)을 제시합니다.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경 란
위 원	변 창 호
위 원	김 선 응
위 원	이 윤 수



이경란
변창호
김선응
이윤수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1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2
1. 안동시 재정의 개황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
(1) 총괄	4
(2) 일반회계	5
(3) 특별회계	9
(4) 다음연도 이월비	13
3. 기금의 결산	14
4. 재무제표의 결산	15
5. 성과보고서	17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8
III.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0
1.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20
2.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회수불능액 결손처리 권고	22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	23
4. 보조사업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정산검사 철저	24
5. 사각지대 통합지원사업에 자원봉사센터직원 활동수당 계상 권유	25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사용 권고	26
7. 기간제근로자 예산집행 철저	27
8. 성과지표의 타당성 개선 및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노력 필요	28
IV.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용	31

I**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4. 5. ~ 4. 24.(20일간)

2. 검사장소 : 안동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3. 결산 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비 고
대표위원	이 경 란	안동시의회 시의원
위 원	변 창 호	세무사
위 원	김 선 응	세무사
위 원	이 윤 수	공인회계사

4. 결산 검사사항

- 세입결산액에 관한 사항 : 예산대비 수입실적
- 세출결산액에 관한 사항 : 지출 및 불용액,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및 적정성
- 기금결산 사항 : 기금 운용의 적정성
- 채권 및 채무에 관한사항 : 채권 및 채무의 적정성
- 국·도비 보조금 사용내역
-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사항 : 재산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재무제표
- 성과보고서

5. 결산 검사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요구 및 현지확인·조사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상호토의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안동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일반 회계	세 입	990,991,950,372	1,123,183,585,623	1,238,855,515,576	1,434,443,109,421	1,469,018,522,219
	세 출	785,826,714,099	857,028,567,705	953,319,345,244	1,191,200,693,318	1,206,308,501,050
	결산상잉여금	205,165,236,273	266,155,017,918	285,536,170,332	243,242,416,103	262,710,021,169
특별 회계	세 입	143,566,429,715	166,733,531,743	167,840,176,803	164,932,959,069	164,317,442,818
	세 출	99,515,431,770	116,743,127,472	109,765,233,475	99,933,365,703	100,305,093,461
	결산상잉여금	44,050,997,945	49,990,404,271	58,074,943,328	64,999,593,366	64,012,349,357
기 금	수 입	10,855,937,805	21,125,672,544	27,001,493,094	92,146,764,958	98,323,777,129
	지 출	1,247,326,182	3,066,591,000	4,505,719,440	2,015,290,130	3,867,457,150
	결산상잉여금	9,608,611,623	18,059,081,544	22,495,773,654	90,131,474,828	94,456,319,979
총 계	세 입(A) (수 입)	1,145,414,317,892	1,311,042,789,910	1,433,697,185,473	1,691,522,833,448	1,731,659,742,166
	세 출(B) (지 출)	886,589,472,051	976,838,286,177	1,067,590,298,159	1,293,149,349,151	1,310,481,051,661
	결산상잉여금 (A-B=C)	258,824,845,841	334,204,503,733	366,106,887,314	398,373,484,297	421,178,690,505

- 2020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총세입 1,731,659,742,166원, 총세출 1,310,481,051,66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외한 421,178,690,505원.
- 최근 5년간 세입과 세출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세입의 주된 증가요인은 보조금 등이 매년 증가한 것임.
- 일반회계의 세출을 주민수(158,907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 는 현년도에 7,591,286원으로 전년대비 148,701원 증가.

【전년 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5,578,957,429,955	73,643,533,467	5,505,313,896,488	1,265,714,877,010	1,053,003,704,428	-212,711,172,582	
2019년	5,179,526,979,278	54,725,348,765	5,124,801,630,513	1,192,021,699,798	944,980,858,185	-247,040,841,613	
증 감	399,430,450,677	18,918,184,702	380,512,265,975	73,693,177,212	108,022,846,243	34,329,669,031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는 투입된 원가 보다 수익이 초과함을 표시['-' : 자원의 절약, '+' : 자원의 선(先) 사용]

- 2020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380,512,265,975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7.42% 개선.
-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총비용-총수익)은 전년 대비 34,329,669,031원(13.9%)이 증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채 무 계 a=(b+c+d)	19,000,000,000	0	0	0	0	
공 채 (b)						
차 입 금 (c)	19,000,000,000	0	0	0	0	
채 무 부 담 행 위 (d)						
지방공기업 채무 (e)						
채무총합계 f=(a+e)	19,000,000,000	0	0	0	0	

- 안동시 채무는 2016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안동터미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위한 지방채 9,000,000,000원을 발행한 이후,
- 2017년에 2009년 지역개발기금 자원보전분 10,000,000,000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9,000,000,000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채무는 없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잉여금 ㉣ = ㉡ - ㉢
합계	1,620,223,260,968	1,633,335,965,037	1,306,613,594,511	326,722,370,526
일반회계	1,455,837,519,528	1,469,018,522,219	1,206,308,501,050	262,710,021,169
특별회계	164,385,741,440	164,317,442,818	100,305,093,461	64,012,349,357
공기업특별회계	114,973,624,570	114,703,890,972	72,259,500,839	42,444,390,133
기타특별회계	49,412,116,870	49,613,551,846	28,045,592,622	21,567,959,224

(단위 : 원)

구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순세계잉여금 ㉣ = ㉠ - ㉡ - ㉢ -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실제반납금 ㉢		현년도 채무상환 ㉣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교부차액		
합계	133,553,778,000 (214,000,000)	35,226,326,455	0	13,225,350,673	△676,436,492		145,393,351,890
일반회계	124,759,743,970 (214,000,000)	32,930,375,155	0	12,898,278,376	△465,965,072		92,587,588,740
특별회계	8,794,034,030	2,295,951,300	0	327,072,297	△210,471,420		52,805,763,150
공기업특별회계	7,510,836,030	1,944,811,550	0	0	0		32,988,742,553
기타특별회계	1,283,198,000	351,139,750	0	327,072,297	△210,471,420		19,817,020,597

※ ()는 자금 없는 이월금으로 명시이월 금액에 미포함.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633,335,965,037원으로 예산현액 1,620,223,260,968원보다 13,112,704,069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 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9.9%인 1,306,613,594,51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6,722,370,526원.
- 이중 명시이월비 133,553,778,000원, 사고이월비 35,226,326,45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2,548,914,181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5,393,351,890원.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45,393,351,890원으로 확인됨.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1,455,837,519,528	1,485,364,414,287	1,469,018,522,219	1,608,198,643	14,737,693,425
결산확인액	1,455,837,519,528	1,485,364,414,287	1,469,018,522,219	1,608,198,643	14,737,693,425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469,018,522,219원은 예산현액의 100.9%로 13,181,002,691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0,340,693,500원 및 세외수입 3,100,081,906원이 증가한 것임.
-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출납액과 일치되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도 결산액과 일치하였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469,018,522,219	1,469,018,522,219	0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불납결손액
2020년	1,455,837,519,528	1,485,364,414,287	1,469,018,522,219	1,608,198,643	102.03	98.90	0.11
2019년	1,420,299,084,443	1,452,232,701,678	1,434,443,109,421	1,489,182,390	102.25	98.78	0.10
증 감	35,538,435,085	33,131,712,609	34,575,412,798	119,016,253	-0.22	0.12	0.01

-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4,575,412,798원이 많은 1,469,018,522,219원 수납.
-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119,016,253원이 증가한 1,608,198,643원.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시효소멸 347,699,263원, 행방불명 48,089,130원, 무재산 789,604,360원, 평가액 부족 422,805,890원임.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1,455,837,519,528	1,485,364,414,287	1,469,018,522,219	1,608,198,643	14,737,693,425
지 방 세		85,131,485,000	104,428,558,210	95,472,178,500	874,906,100	8,081,473,610
세외수입	소 계	40,798,457,000	51,288,051,264	43,898,538,906	733,292,543	6,656,219,815
	경 상 적 세외수입	17,587,810,000	17,910,208,548	17,765,270,360		144,938,188
	임 시 적 세외수입	23,210,647,000	33,377,842,716	26,133,268,546	733,292,543	6,511,281,627
지방교부세		521,339,514,000	522,249,228,000	522,249,228,000		
조정교부금등		26,457,579,000	26,457,579,000	26,457,579,000		
보 조 금		538,713,070,000	537,543,581,710	537,543,581,71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3,397,414,528	243,397,416,103	243,397,416,103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내역 중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6.5%인 95,472,178,500원, 세외수입은 43,898,538,906원 수납.
- 지방교부세는 35.5%인 522,249,228,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26,457,579,000원, 보조금은 537,543,581,710원 수납.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 증감 ^㉒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㉓ = ^㉑ + ^㉒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㉕	보조금 반납금 ^㉖	집행잔액 ^㉗ = ^㉓ - ^㉔ - ^㉕ - ^㉖
결 산 액	1,311,200,000,000	144,637,519,528	1,455,837,519,528	1,206,308,501,050	157,904,119,125 (214,000,000)	12,898,278,376	78,726,620,977
결 환 액	1,311,200,000,000	144,637,519,528	1,455,837,519,528	1,206,308,501,050	157,904,119,125 (214,000,000)	12,898,278,376	78,726,620,977
차 액	0		0	0	0	0	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 세출결산 개요

- 예산현액¹⁾ 1,455,837,519,528원은 전년도 이월액 144,637,519,528원과 예산액 1,311,2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86%에 해당하는 1,206,308,501,050원이었음.
- 일반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주요시책개발사업 등 총304건 157,904,119,125원(명사이월액 124,973,743,970원, 사고이월액 32,930,375,155원).
- 집행잔액²⁾은 예산현액의 5.41%에 해당되는 78,726,620,977원이었으며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후 발생한 잔액 등 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206,308,501,050	1,206,308,501,050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1) 예산현액 =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액

2) 집행잔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9 지출액	2020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1,191,200,693,318	1,455,837,519,528	1,206,308,501,050	82.9%	15,107,807,732	1.3%
일반공공행정	111,537,759,465	100,444,409,710	94,396,083,964	94.0%	-17,141,675,501	-15.4%
공공질서 및 안전	8,936,895,220	8,185,322,000	6,603,107,730	80.7%	-2,333,787,490	-26.1%
교육	6,697,295,624	7,669,046,000	7,427,136,350	96.8%	729,840,726	10.9%
문화 및 관광	173,751,204,956	225,339,483,930	156,092,677,212	69.3%	-17,658,527,744	-10.2%
환경 보호	60,712,394,961	72,419,838,970	67,691,650,346	93.5%	6,979,255,385	11.5%
사회 복지	286,985,447,483	354,687,161,670	332,003,594,811	93.6%	45,018,147,328	15.7%
보건	19,230,904,753	21,059,160,000	19,219,266,279	91.3%	-11,638,474	-0.1%
농림해양수산	158,246,868,179	210,613,581,867	176,381,866,694	83.7%	18,134,998,515	11.5%
산업·중소기업	31,659,628,873	64,777,355,526	57,879,607,664	89.4%	26,219,978,791	82.8%
교통 및 물류	93,011,745,540	72,564,738,520	56,114,661,000	77.3%	-36,897,084,540	-39.7%
국토 및 지역개발	122,155,453,963	150,147,177,335	110,309,190,021	73.5%	-11,846,263,942	-9.7%
예비비		41,897,323,000		0.0%	0	0.0%
기타	118,275,094,301	126,032,921,000	122,189,658,979	97.0%	3,914,564,678	3.3%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지출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332,003,594,811원이며,
- 집행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분야로 96.8% 집행되었음
-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82.8% 증가하였고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45,018,147,328원이 증가함.

(3) 특별회계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㉔	수납액 ㉕	불납결손액 ㉖	미수납액 ㉗=㉔-㉕-㉖
합계	164,385,741,440	169,323,016,326	164,317,442,818	454,983,542	4,550,589,966
공기업특별회계	114,973,624,570	115,427,581,252	114,703,890,972	164,862,730	558,827,5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065,124,070	66,135,958,957	65,710,402,817	85,159,770	340,396,3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908,500,500	49,291,622,295	48,993,488,155	79,702,960	218,431,180
기타특별회계	49,412,116,870	53,895,435,074	49,613,551,846	290,120,812	3,991,762,41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756,910,000	13,758,355,753	13,758,355,753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92,826,000	4,487,216,084	4,025,376,344		461,839,74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830,578,000	1,330,158,093	838,746,681		491,411,412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716,280,000	5,761,150,788	5,715,283,377		45,867,411
주택사업특별회계	5,521,370,000	5,925,220,437	5,845,246,478		79,973,95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11,820,000	596,385,465	596,385,465		0
치수사업특별회계	3,597,373,500	3,746,938,470	3,746,905,950		32,52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729,178,370	10,468,039,685	7,265,281,499	290,120,812	2,912,637,374
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	3,501,673,000	3,650,223,324	3,650,223,324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94,759,000	194,759,705	194,759,705		0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65,985,000	2,968,096,560	2,968,096,560		0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638,000	10,713,450	10,713,450		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982,726,000	998,177,260	998,177,260		0
결산확인액	164,385,741,440	169,323,016,326	164,317,442,818	454,983,542	4,550,589,966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64,317,442,818원은 예산현액의 99.96%로서 그 차액은 68,298,622원이며,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04%로서 전년도 96.11%에 비하여 0.93% 증가.
- 불납결손액은 454,983,542원이며 대다수가 시효소멸에 따름.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69%인 4,550,589,966원으로 납세태만, 무재산 등으로 체납되었으며 전년대비 0.79%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 확인 결과 회계별 결산확인액과 모두 일치하였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64,317,442,818	164,317,442,818	0

- 특별회계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하였음.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64,385,741,440	100,305,093,461	11,089,985,330	52,990,662,64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14,973,624,570	72,259,500,839	9,455,647,580	33,258,476,1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6,065,124,070	44,789,426,490	6,989,347,660	14,286,349,9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908,500,500	27,470,074,349	2,466,299,920	18,972,126,231
기 타 특 별 회 계	49,412,116,870	28,045,592,622	1,634,337,750	19,732,186,498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756,910,000	11,893,600,050	1,117,754,550	745,555,4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992,826,000	3,778,490,360		214,335,64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830,578,000	140,496,360		690,081,640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716,280,000	3,340,000		5,712,94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5,521,370,000	38,757,400		5,482,612,6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611,820,000	187,839,250	11,500,000	412,480,750
치수사업특별회계	3,597,373,500	653,414,930		2,943,958,57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729,178,370	6,567,020,230		1,162,158,140
경북바이오산업단지폐수 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	3,501,673,000	1,636,583,580	320,100,000	1,544,989,4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94,759,000	193,389,510	425,000	944,490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965,985,000	2,698,652,452	184,558,200	82,774,348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638,000			10,638,000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982,726,000	254,008,500		728,717,500
결 산 확 인 액	164,385,741,440	100,305,093,461	11,089,985,330	52,990,662,649
차 액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45,500,000,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8,885,741,44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64,385,741,440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02%로 100,305,093,461원이며,
-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11,089,985,330원(명시이월 8,794,034,030원, 사고이월 2,295,951,300원)으로 주로 소유자 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발생.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24%인 52,990,662,649원으로 주로 예비비 잔액임.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0,305,093,461	100,305,093,461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함.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 2020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비고
합 계	168,994,104,455 (214,000,000)	133,767,778,000 (214,000,000)	35,226,326,455	
일 반 회 계	157,904,119,125 (214,000,000)	124,973,743,970 (214,000,000)	32,930,375,155	
특 별 회 계	11,089,985,330	8,794,034,030	2,295,951,3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9,455,647,580	7,510,836,030	1,944,811,550	
상 수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6,989,347,660	5,638,894,110	1,350,453,550	
하 수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466,299,920	1,871,941,920	594,358,000	
기 타 특 별 회 계	1,634,337,750	1,283,198,000	351,139,750	
수 질 개 선 사 업 특 별 회 계	1,117,754,550	808,863,000	308,891,550	
농 공 지 구 조 성 및 관 리 사 업 특 별 회 계	11,500,000		11,500,000	
경 북 바 이 오 산 업 단 지 폐 수 종 말 처 리 사 업 특 별 회 계	320,100,000	320,100,00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특 별 회 계	425,000	425,000		
댐 주 변 지 역 지 원 특 별 회 계	184,558,200	153,810,000	30,748,200	

※ 명시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 총 이월사업비는 168,994,104,455원(명시이월비 133,767,778,000원, 사고이월비 35,226,326,455원)임.
- 명시이월 중 자금 없는 이월금³⁾은 214,000,000원이며 건설과 [균]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미수령에 의하여 발생.

3) 자금 없는 이월

-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자금이 부득이 해당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처리

3. 기금의 결산

○ 2020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90,131,474,828	4,324,845,151	8,192,302,301	3,867,457,150	94,456,319,979
재난관리기금	3,540,315,340	126,111,402	915,421,022	789,309,620	3,666,426,742
노인복지기금	1,063,185,072	15,102,520	19,152,520	4,050,000	1,078,287,592
자활기금	918,035,432	△89,050,506	71,086,094	160,136,600	828,984,926
양성평등기금	303,442,471	5,750,049	5,750,049		309,192,520
식품진흥기금	384,864,597	14,429,527	32,333,527	17,904,000	399,294,124
체육진흥기금	3,429,583,961	△384,934,745	35,065,255	420,000,000	3,044,649,21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87,178,242	△206,806,720	539,763,210	746,569,930	280,371,522
옥외광고 발전기금	415,321,341	△96,593,919	62,893,081	159,487,000	318,727,422
장사시설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1,581,449,580	△1,518,755,430	51,244,570	1,570,000,000	62,694,150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	18,001,441,258	6,457,941,678	6,457,941,678		24,459,382,936
재정안정 화기금	60,006,657,534	1,651,295	1,651,295		60,008,308,829

- 2020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90,131,474,828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8,192,302,301원을 더하고 사용액 3,867,457,150원을 차감한 94,456,319,979원임.
- 검사결과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의 2020 회계연도말 현재액은 94,456,319,979원으로 전년대비 4,324,845,151원이 증가하였음.

4. 재무제표의 결산

○ 2020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179,526,979,278	5,578,957,429,955	399,430,450,677	7.71
I. 유 동 자 산	417,889,799,024	417,821,089,254	-68,709,770	-0.02
II. 투 자 자 산	16,138,929,577	53,616,251,957	37,477,322,380	232.22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93,299,568,742	195,855,008,293	2,555,439,551	1.32
IV. 주 민 편 의 시 설	904,677,904,892	1,128,079,790,374	223,401,885,482	24.69
V. 사 회 기 반 시 설	3,638,421,166,285	3,775,880,717,092	137,459,550,807	3.78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9,099,610,758	7,704,572,985	-1,395,037,773	-15.33
부 채	54,725,348,765	73,643,533,467	18,918,184,702	34.57
I. 유 동 부 채	12,521,107,585	34,301,830,432	21,780,722,847	173.95
II. 장 기 차 입 부 채	0	0	0	0.0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2,204,241,180	39,341,703,035	-2,862,538,145	-6.78
순 자 산	5,124,801,630,513	5,505,313,896,488	380,512,265,975	7.42
I. 고 정 순 자 산	4,708,692,178,207	5,073,460,375,597	364,768,197,390	7.75
II. 특 정 순 자 산	90,699,835,929	95,630,711,130	4,930,875,201	5.44
III. 일 반 순 자 산	325,409,616,377	336,222,809,761	10,813,193,384	3.32

- 2020회계연도 말 자산은 5,578,957,429,955원으로 전년도의 5,179,526,979,278원 보다 399,430,450,677원(7.71%) 증가. 이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또한, 2020회계연도 말 부채는 73,643,533,467원으로 전년도의 54,725,348,765원 보다 18,918,184,702원(34.57%) 증가. 이는 기타유동부채 등 유동부채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 업 순 원 가 (가 - 나)	366,910,561,259	309,642,472,856	-57,268,088,403	-15.61
가.	사 업 총 원 가	777,872,985,714	883,058,890,359	105,185,904,645	13.52
나.	사 업 수 익	410,962,424,455	573,416,417,503	162,453,993,048	39.53
II.	관 리 운 영 비	123,203,587,202	128,423,510,273	5,219,923,071	4.24
III.	비 배 분 비 용	43,904,285,269	41,521,303,796	-2,382,981,473	-5.43
IV.	비 배 분 수 익	40,367,634,725	31,097,607,055	-9,270,027,670	-22.96
V.	재 정 운 영 순 원 가 (I + II + III - IV)	493,650,799,005	448,489,679,870	-45,161,119,135	-9.15
VI.	일 반 수 익	740,691,640,618	661,200,852,452	-79,490,788,166	-10.73
VII.	재 정 운 영 결 과 (V - VI)	-247,040,841,613	-212,711,172,582	34,329,669,031	-13.90

- 안동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883,058,890,359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573,416,417,503원을 차감한 309,642,472,856원이며,
- 일반회계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시민편의 교통환경 조성 (29,798,924,606원)과 노인복지증진도모(27,757,593,007원) 사업이었음.
- 또한, 2020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7,200,596,966원과 기타관리 운영비 1,222,913,307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1,079,920,123원, 기타비용 40,441,383,673원(자산처분손실 8,147,875원 포함) 등으로 구성. 비배분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8,819,692,487원, 기타수익 2,277,914,568원으로 구성되었음.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212,711,172,582원으로 전년도의 -247,040,841,613원 보다 34,329,669,031원(13.9%) 증가하였음.

5. 성과보고서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2020 회계연도의 ‘**품격높은 도시·풍요로운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정책사업목표(95개)-단위사업(23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5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2	95	232	19	129	84
기획예산실	1	2	6	0	3	3
종합민원실	1	1	2	0	2	0
공보감사실	1	2	5	2	3	0
행정지원실	1	1	3	0	3	0
문화관광국	1	14	40	4	11	25
경제산업국	1	19	33	5	22	6
복지환경국	1	20	50	3	29	18
도시건설국	1	21	49	4	33	12
보건소	1	4	14	0	8	6
농업기술센터	1	3	14	1	7	6
의회사무국	1	1	1	0	0	1
평생학습원	1	7	15	0	8	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	0	0	0	0	0

- 2020년 기준 성과지표 232개 중 초과달성 지표는 19개, 달성 지표는 129개이며 84개 지표는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의하면 사업목적과 명확하게 연계되는 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재무재표 첨부)

【채 권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8,751,755,207	362,995,680	1,227,129,690	7,887,621,197
일반회계	6,153,857,800	0	611,964,000	5,541,893,800
특별회계	2,597,897,407	362,995,680	615,165,690	2,345,727,39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3,531,430	45,203,200	28,514,930	510,219,7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 특별회계	732,831,413	177,988,000	232,908,000	677,911,413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 특별회계	178,468,764			178,468,764
주택사업특별회계	1,193,065,800	139,804,480	353,742,760	979,127,520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887,621,197원 임. 주요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융자금채권 증가에 의한 것이며, 감소 요인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감소와 기타 특별회계 융자금채권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2) 채무

【채 무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 해당 없음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				-

(3) 공유재산

○ 2020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2,666,546,199,748	423,963,770,612	9,224,333,583	3,081,285,636,777	
행정 재산	소 계	2,602,541,555,802	415,832,779,571	8,978,153,362	3,009,396,182,011
	공 용 재 산	416,980,285,879	53,559,598,890	5,456,080,219	465,083,804,550
	공 공 용 재 산	2,171,201,644,363	354,387,008,101	3,289,187,649	2,522,299,464,815
	기 업 용 재 산	9,774,385,991	7,886,172,580	20,830,680	17,639,727,891
	보 존 용 재 산	4,585,239,569	-	212,054,814	4,373,184,755
일 반 재 산	64,004,643,946	8,130,991,041	246,180,221	71,889,454,766	

- 결산액은 전년 보다 414,739,437,029원 증가한 3,081,285,636,777원임.
- 주요 증가 내역은 선성현문화단지 조성, 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립새싹어린이집 신축, 전통빛타래길쌈마을 조성, 안동시립도서관 옥동분관 건립, 농업인 종합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옥동 공영주차장 증축 등에 의해 증가함.

(4) 물품

○ 2020회계연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1,764	126	78	1,812
금 액	14,184,797,110	2,510,558,312	1,061,524,947	15,633,830,475

- 물품 현재액은 전년대비 1,449,033,365원 증가한 15,633,830,475원 임. 주요 증가 사유는 공용차량과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구매이며, 주요감소 사유는 공용차량 매각 및 물품 내구연한 초과, 수리비 과다 등으로 인한 물품폐기임.

*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59호)에 따른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변동사항 반영.

Ⅲ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① 세외수입 징수 대책 강구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은 사업(과목)별로 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하여 왔으나, 2016년부터는 부과 다음 연도의 지방 세외수입(일반회계 시세분) 체납액은 세정과로 이관하여 세정과에서 징수관리를 하고 있음.
- 해당(부과)부서에서는 당해 연도에만 부과,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하고 있어 부과후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업무에 다소 소홀하게 됨.
- 세정과에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으나, 압류재산 대부분이 차량임. 압류차량의 경우 압류기간이 경과될수록 가치하락은 물론 실질적으로 폐차 또는 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 됨.
- 2020년 말 기준 체납액의 30% 이상이 2010년 이전 발생 분으로 압류이외 적극적인 회수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체납자와 연락불가, 폐업, 압류차량의 소멸 등의 사유도 일부 확인 됨.

<당해 연도 50% 미만 수입 징수율 현황>

(단위: 원)

부 서	세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종합민원실	이륜차법규위반과태	8,899,900	4,177,000	4,722,900	46.9%
	소송비용청구료	19,256,021	6,521,558	12,734,463	33.9%
투자유치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위반과태	3,000,000	-	3,000,000	0.0%
도시디자인과	시군구재산임대료(공사공단)	23,876,399	2,644,981	21,231,418	11.1%
건설과	국유재산사용료	13,449,540	5,229,710	8,219,830	38.9%
교통행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598,093,950	116,184,570	481,909,380	19.4%
토지정보과	이행강제금	68,400,000		68,400,000	0.0%

<지난연도 5% 미만 수입 징수율>

(단위: 원)

부 서	세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행정지원실	과 다 지 급 회 수 금	86,668,650	500,000	86,168,650	0.6%
전통문화예술과	그 외 수 입	19,717,790	-	19,717,790	0.0%
일자리경제과	기 타 사 용 료	844,000	-	633,000	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태료	1,226,500	-	1,226,500	0.0%
	부 당 이 득 금	9,708,090	-	9,708,090	0.0%
농 정 과	농 지 법 과 태 료	9,030,110	-	6,175,860	0.0%
	농 지 법 이 행 강 제 금	6,439,640	50,000	6,389,640	0.8%
회 계 과	도 유 재 산 변 상 금	1,073,210	-	1,073,210	0.0%
	위 약 금	5,935,030	-	5,935,030	0.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 애 인 자 동 차 표 지 위 반 과 태 료	2,324,000	-	2,324,000	0.0%
환경관리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태료	5,443,600	-	5,443,600	0.0%
산 립 과	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	606,600	-	606,600	0.0%
	소 송 비 용 청 구 료	811,650	-	811,650	0.0%
건 설 과	국 유 재 산 임 대 료	294,520	5,620	288,900	1.9%
	국 유 재 산 사 용 료	646,250	15,360	630,890	2.4%
	공 유 재 산 사 용 료	109,450	-	109,450	0.0%
건 축 과	소 송 비 용 청 구 료	14,776,940	-	14,776,940	0.0%
교 통 행 정 과	자 동 차 손 해 배 상 보 장 법 위 반 과 태 료	4,449,131,530	248,578,980	3,872,196,340	5.6%
	무 단 방 치 차 량 범 칙 금	1,000,000	-	1,000,000	0.0%
안 전 재 난 과	소 송 비 용 청 구 료	8,810,560	-	8,810,560	0.0%
	그 외 수 입	2,873,020	-	2,873,020	0.0%
토 지 정 보 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거래신고에관한법	9,632,300	-	9,632,300	0.0%
	이 행 강 제 금	37,600,000	-	37,600,000	0.0%
	부 동 산 실 권 리 자 명 의 등 기 법 과 징 금	1,235,678,510	-	1,235,678,510	0.0%
	부 동 산 거 래 신 고 의 무 위 반 과 태 료	503,903,560	-	113,545,010	0.0%
	소 송 비 용 청 구 료	2,111,753	-	1,120,200	0.0%
농업기술센터	시 군 구 재 산 임 대 료	130,000	-	130,000	0.0%
	부 당 이 득 금	1,000,000	-	1,000,000	0.0%
평생교육과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	3,000,000	-	1,000,000	0.0%

[개선 및 권고사항]

- 체납액이 세정과로 이관된 이후에도 부과부서에서는 체납액을 사유별로 책임감을 갖고 지속 관리하여야 하며, 세정과에서도 재산조회, 압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변호관 영치 등 적극적으로 징수 대책을 고민하여 체납을 일소하여야 함.
- 장기체납자 중 연락두절, 회생불가 등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계속 체납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낭비로 보임. 징수 불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결손 처분으로 체납관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제 징수가 가능한 체납 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권고함.
- 또한,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당해연도 징수율은 20%미만으로 별도의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②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회수 불능액 결손처리 권고

[현황 및 문제점]

- 1997년부터 시행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안동시와 주택 소유자간 계약으로 보증금 혜택자인 세입자가 이주 또는 사망시 즉시 회수해야 하나 주택소유자의 반납불응 또는 담당자의 회수 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 체납 되고 있음.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전 세 보증금	사망자	8	75	
	그 외	24	253	
	합 계	32	328	

[개선 및 권고사항]

- 해당 부서에서는 미납건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회수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회수 가능한 것은 조속히 회수하고, 회수 불능금액은 결손 처분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 임.

③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과다하게 체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함.
- ▶ 2020년 말 기준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가 14,222건에 체납금액은 4,354백만원임.
- ▶ 이는 체납건수가 우리시 인구의 9%에 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건, 원)

부과연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4,222	4,354,105,720	
2020년도	1,186	481,909,380	
2019년도 이전	13,036	3,872,196,340	

[개선 및 권고사항]

- 1건당 체납금액은 평균 306,152원 정도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체납건수가 많아 부과부서인 교통행정과 직원 1명과 세정과 세외수입팀 담당직원이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징수)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인원 충원 등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체납자들이 과태료 납부자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수의 상습고질 체납자가 발생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등 불법차량 운행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시 차원의 특단의 징수 대책이 필요함.

4] 보조사업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정산검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부서의 경우 보조금 정산검사 및 정산서류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 체육새마을과 - 「안동마라톤대회 사업비 집행」

[현황 및 문제점]

-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 안동마라톤대회는 사업비 편성시 자부담 분을 마라톤대회 당일에 집중 편성하여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취소시점까지 집행된 모든 경비는 보조금으로만 집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마라톤대회는 물론 유사행사의 보조금 심의(편성) 시 행사가 취소 될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비목별 집행계획에 상관없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보조금 편중 집행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유통특작과 - 「안동사과품질고급화 농자재 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유통특작과 소관 ‘안동사과품질고급화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협, 영농조합 법인, 작목반 등을 사업자로 하여 반사필름, 착색제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임

- 각 보조사업자(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는 시 보조금과 농민 자부담으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고, 이때 보조사업자(농협 등)는 직접 공급자로서 농민에게 농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됨.
- 그럼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 사업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의 신고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담당자(부서)는 세금계산서 등 보조사업 정산서를 철저히 확인하여 오류 또는 착오정산 되지 않도록 바람.

⑤ “사각지대 통합지원사업” 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활동수당 계상 권유

[현황 및 문제점]

- 안동시자원봉사센터는 시 지원금(운영비) 30백만원으로 전문자원봉사자와 민·관 협력체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통합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 지원금(운영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전문자원봉사자 활동비와 서비스지원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실비지급이 되지 않고 있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수시로 전문자원봉사자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없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게도 봉사활동비를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통합지원 사업비” 를 증액(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사용 권고

▶ 안전재난과 - 「낙동강 힐링로드 보조사업」

[현황 및 문제점]

- 행사성 사업은 시민의 복지와 문화생활 향유 등을 주요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업에 지역의 관련업체에서도 참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생각됨.
- 안전재난과의 2020 낙동강 힐링로드 보조사업은 경북도공모사업으로 1억 2천만원(도비 5, 시비 5, 자부담 2)의 예산이 편성됨.
- 본 사업은 안동의 세계물문화관에서 안동의 ‘물’을 주제로 개최되었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역의 예술인, 행사 대행업체는 물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다수 관외업체(대구, 포항, 경주 등지)에서만 참여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안동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는 일정비율 이상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바람.

▶ 도시디자인과 - 「경북도 공모사업-간판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부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도시경관을 개선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이사업에는 안동시에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개 영세 사업자로 공모 제안서 작성 등이 불가하여 참여가 사실상 불가함.
- 현재,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미 개최 등으로 광고업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시에서 발주하는 간판개선 사업 대부분을 타 지역 업체가 시공하고 있어 광고(간판)업계는 더욱 침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2020년에는 전체 사업비 9억 중 5억 9천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 임에도 안동시 소재 지역 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는 전무하였음.

[간판개선사업 발주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 연도별	2019년	2020년	2021년(예정)
간판갯수	144	259	60
사 업 비	400	900	200

[개선 및 권고사항]

- 지역에서 대규모 간판개선사업을 발주할 경우,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 광고업체가 열악하여 제안서 작성 등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으로 공모하는 방안,
- 제작안과 실시설계는 공모로 선정하고 설치하는 지역 업체가 하도록 분리 발주하는 방안 등 사업규모, 지원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7] 기간제 근로자 예산 집행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안동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부서는 “안동시 근로자 채용사전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채용 승인을 받은 인원에 대해서 소요 예산을 포함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근속기간을 10개월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세심한 검토 없이 장기 계약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없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추경예산편성 후 지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안동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동시 근로자채용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 따른 사용일수, 소요 예산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바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상기시킬 것을 건의함.

⑧ 성과지표의 타당성 개선 및 충실한 성과보고서 작성 노력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 당초 설정한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여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충실한 성과분석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안동시의 경우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지표 설정이 ▸ 목표와의 연관성이 부족한 지표 ▸ 정책사업을 대표하는 성과 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 전년도의 목표를 그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 성과지표의 측정단위를 목표건수로 설정하여 성과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음.
 - 성과지표를 목표건수로 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건수(일자리 경제과), 주·정차 단속실적 건수(교통행정과),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활동 건수(보건소) 등이 있음.
- 총 232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84개, 초과달성 19개 지표로 나타남.
- 또한, 성과목표에 미달하거나 초과달성된 지표에 대하여는 미달 또는 초과된 주요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함에도 분석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문화관광국은 총 40개의 지표 중 25개가 미달성 되었음에도 원인분석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음.

<총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실 국 명	성 과 목 표					
	전 략 목표수	정 책 사 업 목 표		성 과 달 성 도		
		개 수	지 표 수	초 과 달 성	달 성	미 달 성
계	12	95	232	19	129	84
기획예산실	1	2	6	0	3	3
종합민원실	1	1	2	0	2	0
공보감사실	1	2	5	2	3	0
행정지원실	1	1	3	0	3	0
문화관광국	1	14	40	4	11	25
경제산업국	1	19	33	5	22	6
복지환경국	1	20	50	3	29	18
도시건설국	1	21	49	4	33	12
보 건 소	1	4	14	0	8	6
농업기술센터	1	3	14	1	7	6
의회사무국	1	1	1	0	0	1
평생학습원	1	7	15	0	8	7

-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함.
- 일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은 단순한 비율(달성치/목표치*100)로 설정하여 목표치의 적정성, 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고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만으로 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일부 측정치는 일률적으로 100%, 90% 등으로 기재되거나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비율로 기재되는 등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짐.

<성과지표 목표와 실적이 일률적으로 기재된 사례>

부 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	실적	달성률
산 립 과	산 불 발 생 최 소 화 (%)	$(1 - (\text{실제발생건수} - \text{목표발생건수}) / \text{목표발생건수}) * 100$	100	100	100%
	숲 가 꾸 기 실 적 (%)	$(\text{실적} / \text{목표}) * 100$	100	100	100%
안 전 재 난 과	댐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추 진 실 적 (%)	$(\text{사업건수} / \text{총건수}) * 100$	100	100	93%
농 업 기 술 센 터	환 경 미 화 용 꽃 묘 생 산 량 (%)	$(\text{꽃묘생산실적} / \text{꽃묘생산계획}) * 100$	100	90	90%
	농 업 경 영 능 력 향 상 및 안 전 축 산 물 생 산 (%)	$(\text{교육 및 사업완료} / \text{목표}) * 100$	100	100	100%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작성 편의를 위해 비율을 측정산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목표치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산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람.
- 성과보고서 작성 중요성에 대해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IV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조치내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이월 최소화 권고 [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12.31.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반회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불용률(불용총액/일반회계 최종예산액)과 이월률(이월총액/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이 동종지방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은 경우 2019년 결산분부터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당해 연도에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과 이월을 최소화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1항 내지 3항에서는 이월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집행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인 재정의 계획성 제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부합하고, 지방교부세 확충 및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이월 최소화는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임 ○ 또한, 경제성장 둔화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는 현시점에 확장적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이월예산은 큰 걸림돌임 ○ 지난해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연내 사업 집행 마무리 독려와 함께 이월예산 부서 실무심사 도입·시행 등을 통해 전년도 대비 18%가 줄어드는 등 이월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음 <p>※ 부서 실무 심사 : 2019. 12. 5. ~ 12. 10.</p>	<p>기획예산실</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201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총 이월예산은 146,745백만원(명시이월 122,584백만원, 사고이월 24,161백만원)으로 지난해 179,995백만원(명시이월 131,909백만원, 사고이월 48,086백만원)보다 18%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여전히 이월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p> <p>○ 전년보다 18% 가까이 이월액이 줄어드는 등 당해 연도 내 예산을 집행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는 점은 안동시 재정운영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할 수 있음</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그러나 안동시 일반회계의 45~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필요함</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토지 미승락, 사업 미동의 등)에 의한 사전절차 지연, 국·도비예산 교부지연 등 이월 예산 최소화에 많은 장애요인이 산재함</p> <p>○ 20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불가사업을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세출구조조정을 시행 하여 이월을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음</p> <p>○ 21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 예산 편성을 하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p> <p>○ 지방교부세는 우리시 최고의 세입원인 만큼 이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집행내역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패널티를 최소화하고,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재정의 효율성·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②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 지방회계법과 배치(背馳)</p>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최대 5년간 최저 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참여기업을 공모 및 심사·선정해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8년도의 경우 15개 기업 109명을 대상으로 9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다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비율증가 등으로 도내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경북도에서는 7월분까지 사업비를 제외하고 잔여예산 115,005천원(국비 104,550, 도비 10,455)은 반납 받아 타 시군에 배정함. ○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잔여사업비 419,379천원은 2018.07.24.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당월분 또는 수개월분의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신청 가능)에 따라 익년도인 2019년01월23일 소급해서 지급함.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 지침변경에 따라 소급적용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및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지원기간은 5년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은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은 3년으로 경상북도에서 사업 공모하고 심사위원회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사업참여 기업을 선정하며 지원인원을 배정받아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p>일자리경제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그러나, 지방회계법 제37조는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공무원의 보수나, 연금부담금, 반환금,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원인행위 부존재로 채무가 확정되었다 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급해서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시달 함</p> <p>○ 더구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법규와도 배치되는 지침이라 할 수 있음.</p> <p>만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외 타 법률이 적용돼 소급지출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변경된 지침의 상위 법률적 규정을 적시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p>	<p>○ 매년 7~8%정도 인상되었던 최저시급이 2017년도에는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16.4%로 인상되었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확대, 지원비율 증가 등 불가피한 상황변화로 인해 일시적 일자리 창출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2018. 8월~12월분 지원금을 2019. 1. 23. (주)돌봄사회서비스센터외 14개기업에 대해 419백만원 소급지급하게 되었음.</p> <p>○ 지난연도 예산을 해당연도에 소급 지급한 근거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상 「광역자치단체장은 약정 후 채용지연, 중도탈락, 재심사 탈락 등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고려하여 계획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심사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사회적기업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부담 감소를 위해 지원금 신청방법으로 사업 참여기업은 임금지급일에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매월 15일까지 지원금신청서 제출하던 것을 당월 또는 수개월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8. 8. 1.개정되어 청구에 의한 지급이라 소급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경상북도로 부터 통보받았음.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외 타 관련법은 없으므로 추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사회적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음.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③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방안 검토</p> <p>[현황]</p> <p>○ 우리시는 퇴직금제도 운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나, 국비공무직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국비예산이 편성되어 지출 후, 충당금 보관방법의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p> <p>【안동시 국비공무직 부서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서 구분</th> <th>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th> <th>여성가족과 (일반회계)</th> <th>보건소 (일반회계)</th> </tr> </thead> <tbody> <tr> <td>적립방법</td> <td>전용계좌 적립</td> <td>전용계좌 적립</td> <td>세입세출외현금</td> </tr> </tbody> </table> <p>【도내 타 시·군 적립현황】 2020. 4. 17.현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방법 구분</th> <th>계</th> <th>전용계좌 적립</th> <th>세입세출외현금</th> <th>세외수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시·군</td> <td rowspan="2">22</td> <td>17</td> <td>4</td> <td>1</td> </tr> <tr> <td>포항,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td> <td>경주, 의성, 고령, 성주</td> <td>영양</td> </tr> </tbody> </table>		부서 구분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보건소 (일반회계)	적립방법	전용계좌 적립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방법 구분	계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시·군	22	17	4	1	포항,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주, 의성, 고령, 성주	영양	<p>○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국비공무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국비예산에서 지출 후 전용계좌 및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 하였으나 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일괄 회 계 처리 완료 하였으며 향후 예산으로 퇴직 금을 편성하여 지급 계획임</p> <p>○ 행정지원실-11484(2020.5.27.)호에 의거 관련부서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방법 변경 안내</p> <p>○ 기존 적립중인 퇴직급여충당금은 2020. 6. 30(화)까지 기타수입으로 처리 완료</p>		행정지원실
부서 구분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보건소 (일반회계)																						
적립방법	전용계좌 적립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방법 구분	계	전용계좌 적립	세입세출외현금	세외수입																					
시·군	22	17	4	1																					
		포항, 김천,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덕, 청도,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주, 의성, 고령, 성주	영양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문제점]</p> <p>○ 관련 부처에서 공공부문 공무원에 대한 제도(임금, 근로조건 등)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기관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하게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력 소모가 막대함</p> <p>○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 3월 공공부문 공무원 정책 등을 논의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가 마련되어 시달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이렇듯 퇴직급여충당 방법에 관한 지침 또한 없어,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자체 판단하여 적립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일괄 회계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p>	<p>○ 부서별 조치결과</p> <table border="1" data-bbox="1189 424 1928 906"> <thead> <tr> <th rowspan="2">구분 부서</th> <th colspan="2">기 존</th> <th colspan="2">기타수입(그외수입) 세입조치</th> </tr> <tr> <th>적립 방법</th> <th>적립금액 (원)</th> <th>납부일</th> <th>납부금액 (원)</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142,975,679</td> <td></td> <td>142,975,670</td> </tr> <tr> <td>사회 복지과</td> <td>전용 계좌</td> <td>47,344,089</td> <td>2020.06.30</td> <td>47,344,080</td> </tr> <tr> <td>여성 가족과</td> <td>전용 계좌</td> <td>65,649,300</td> <td>2020.06.17</td> <td>65,649,300</td> </tr> <tr> <td>보건소</td> <td>세입세 외현금</td> <td>29,982,290</td> <td>2020.06.24</td> <td>29,982,290</td> </tr> </tbody> </table> <p>* 사회복지과 : 9원(원단위) 그외수입 납부불가 :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 처리</p>	구분 부서	기 존		기타수입(그외수입) 세입조치		적립 방법	적립금액 (원)	납부일	납부금액 (원)	합계		142,975,679		142,975,670	사회 복지과	전용 계좌	47,344,089	2020.06.30	47,344,080	여성 가족과	전용 계좌	65,649,300	2020.06.17	65,649,300	보건소	세입세 외현금	29,982,290	2020.06.24	29,982,290	
구분 부서	기 존		기타수입(그외수입) 세입조치																												
	적립 방법	적립금액 (원)	납부일	납부금액 (원)																											
합계		142,975,679		142,975,670																											
사회 복지과	전용 계좌	47,344,089	2020.06.30	47,344,080																											
여성 가족과	전용 계좌	65,649,300	2020.06.17	65,649,300																											
보건소	세입세 외현금	29,982,290	2020.06.24	29,982,290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④ 천연색소 원료생산 계약재배 생산물 보상사업에 대한 검토</p> <p>[현황 및 문제점]</p> <p>○ 「안동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 농업기술센터는 천연색소 원료생산 계약재배 농산물 실비보상사업비 196,500,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재단법인 한국 천연색소 산업화 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였음</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실제 농산물 계약재배 실비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p>	<p>○결산검사 권고에 따라, 2021년도 예산편성 시 차액보상이나 인센티브 성격이 아닌, 운영성격의 구매금을 “운영보조금” 으로 예산편성하였음</p>	<p>농업기술센터</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⑤ 민간행사보조사업(우리소리 축제)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p> <p>[현황 및 문제점]</p> <p>○ 우리소리를 중심으로 전통 국악 축제를 표방하는 우리소리 축제 보조금 정산결과를 검토한 바 당초 축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B-Boy 공연, 패션쇼 등)과 다소 과다한 인건비 등이 집행된 부분이 확인 됨.</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이에따라, 민간행사보조사업 시행 시 축제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p>	<p>○ 금년 사업은 민요·판소리 등의 국악공연에 한정하여 기획하였고, 축제 취지에 맞지 않는 B-Boy 공연과 궁중패션쇼는 진행하지 않음.</p> <p>○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등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p>	<p>전통문화 예 술 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⑥ 안동문화 관광단지 운영에 대한 제안</p> <p>[현황]</p> <p>○ 안동문화 관광단지 관리운영 위탁협약에 따라 경북관광공사가 수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 관광단지에 대한 운영 보조금은 당초 안동시가 예측한 운영비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 협약서에 명시된 불합리적인 위탁비용 규정에 따라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임</p> <p style="text-align: center;">[보조금 지급현황] (단위:원)</p> <table border="1" data-bbox="174 858 1158 1056"> <thead> <tr> <th>구 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280,609,000</td> <td>1,360,830,000</td> <td>1,200,000,000</td> </tr> <tr> <td>교부결정액</td> <td>1,100,000,000</td> <td>1,100,000,000</td> <td>1,200,000,000</td> </tr> <tr> <td>운영비부족분 지급액</td> <td>180,609,000</td> <td>260,830,000</td> <td></td> </tr> </tbody> </table> <p>[문제점]</p> <p>○ 문화관광 단지 내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한계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북관광공사의 적극성 부재로 인해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개장한 유교랜드의 내부 설비 등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거액의 교체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80,609,000	1,360,830,000	1,200,000,000	교부결정액	1,100,000,000	1,100,000,000	1,200,000,000	운영비부족분 지급액	180,609,000	260,830,000		<p>○ 안동문화관광단지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은 공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의 절감 및 관람객 증대로 인한 관광단지 활성화가 기대됨</p> <p>○ 이를 위해, 시설 활성화 계획을 가진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추진 중임</p> <p>○ 추진현황</p> <p>-2019.02. : 유교랜드 민간위탁 계획(안)보고</p> <p>-2019.09. : 온뜨레피움 민간위탁 계획(안)보고</p> <p>-2019.10. : 제208회 안동시의회(임시회)원안가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민간위탁 동의안)</p> <p>-2020.09. :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p> <p>-2020.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유교랜드 수탁자 선정</p> <p>-2020.11. : 제2차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온뜨레피움 수탁자 선정</p> <p>-2021.04. : 온뜨레피움 위·수탁협약 체결</p> <p>-2021.04. : 유교랜드 위·수탁협약 체결 협의 중</p>	<p>관광진흥과</p>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280,609,000	1,360,830,000	1,200,000,000															
교부결정액	1,100,000,000	1,100,000,000	1,200,000,000															
운영비부족분 지급액	180,609,000	260,830,000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제안하였으나 조치가 없어 관광단지 활성화가 요원한 실정임</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이에 따라, 기 제안된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조속한 시행으로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소모적인 운영비는 줄이고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p>	<p>○ 향후계획</p> <p>-2021.05. : 온프레피움 리모델링공사 시행</p> <p>-2021.08. : 온프레피움 민간위탁 운영</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⑦ 「엘앤에스 농식품 6차 산업화 투자조합」 투자손실 최소화</p> <p>[현황 및 문제점]</p> <p>○ 우리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엘앤에스 농식품 6차 산업화 투자조합에 20억 원(20%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선정한 농식품경영체 대부분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9년도 말 현재 730백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였음</p> <p>[개선 및 권고사항]</p> <p>○ 2020. 4월 현재 기업들의 재정 상태로 보아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투자가 종료되는 2021. 1월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요구가 필요함</p>	<p>○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업체별 현황과 투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집행계획 독려</p> <p>○ 업무집행계획에 따라 조합재산이 관리·운용되고 있는지 조합재산 현황 및 투자업체 경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행상황 수시 점검</p>	<p>투자유치과</p>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해당부서
<p>⑧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철저</p>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물류비로 매년 현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에 39개 업체가 총 2억원을 지원 받았음 ○ 최근 몇 년 동안의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 내 시군에서 기업의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우리시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본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임 <p>[개선 및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유가보조금을 받는 업체에 중복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물류비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비 보조금 교부 전 유가보조금 등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를 통해 업체에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음 ○ 물류비 보조금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 전용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추후 사업비 정산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음 	투자유치과